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24
----------	-------

발의연월일 : 2025. 10. 27.

발의자 : 박홍근 · 김동아 · 김종민

한준호 · 김상욱 · 박찬대

박정현 · 이정문 · 조승래

이광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과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제4호 및 제5호”를 “제4호 · 제5호 및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대중교통이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을 “대중교통이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및 식당사용분”으로,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및 식당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나목 중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식당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식당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식당사
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
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식당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
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식당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
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식당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
드등사용분 - 식당사용분) × 100분의 4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

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
 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
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
 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
 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
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
 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
 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생략)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
 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
 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
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식당사용분”이라 한다) × 10
0분의 30

5. -----

-----대중교통이용
분 · 문화체육사용분 및 식당
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및 식당사용분-----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
 ---. -----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생 략)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 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 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

가. (현행과 같음)

나. -----
-----신용카드
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과 식당사용분-----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식당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 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 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7. (생략)

③ ~ ⑨ (생략)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 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식당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식당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식당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식당사용분) × 100분의 40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

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 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 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 ----- ----- ----- ----- ----- -----.
1. (생 략) 2. <u>제7호</u> 의 금액(연간 100만원 을 한도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u>제8호</u> ----- -----